

# 울산광역시북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선	기 관 의 장
람	

## 제 1244 호 2020. 7. 16.(목)

### 고 시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33호[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1
-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134호[울산광역시 북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3

### 공 고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825호[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고] 6
-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0-836호[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7

안 내	○ 북구 공보는 매주 목요일 발행되오니 공보게재 의뢰는 전주 수요일까지 공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긴급한 내용은 사전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구 전자공보 확인방법 ☞ 북구 홈페이지(www.bukgu.ulsan.kr) → 구정소식 → 알림마당 → 북구공보
--------	--

회 람								
--------	--	--	--	--	--	--	--	--

발행 : 울산광역시북구 편집 : 기획예산담당관(☎241-7125, 행정7125)

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0 - 133호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우리구 관내 건물에 대하여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건물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중원지1길 94 외 1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지참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민원지적과 (☎052-241-7583,7585)에 문의 또는 울산광역시 북구청 홈페이지([www.bukgu.go.kr](http://www.bukgu.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 ([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 7. 16.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조서

순번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고시일	도로명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1	울산광역시 북구	창평동 83	울산광역시 북구	중원지1길 94	2020-07-16	기존자연마을인증원지마을에 위치하여도로명을부여	2004-08-09
2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494-1	울산광역시 북구	당수골37길 1	2020-07-16	당수나무가 있는 당수골 명칭 사용하여서 도로명을 부여	2017-05-04

울산광역시 복구 고시 제2020 - 134호

#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구역 지정 고시

간접흡연으로부터 구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울산광역시 복구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 방지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연구역을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0년 7월 1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지정취지

학교절대보호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과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 2. 지정내용

- 지정일 : 2020. 7. 20.
- 지정대상 : 50개소

총 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50	23	13	12	2

※ 향후 학교절대보호구역 추가 신설·변경 시 금연구역으로 자동 지정·변경됨.

- 지정범위 : 학교절대보호구역
  - ※ 학교절대보호구역 :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 50m까지인 지역
- 계도기간 : 2020. 7. 20. ~ 10. 20.(3개월 간)
-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2020. 10. 21.부터(과태료 2만원)

### 3. 고시방법 : 구청·보건소 홈페이지 및 구보, 동 게시판

###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복구보건소 금연지도(☎ 052-241-830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금연구역 지정 현황]

## ○ 북구 관내 초·중·고(특수) 학교 50개소

연번	구분	학교명	주소	출입문 개수	비 고
1	초등학교	강동초등학교	북구 화암4길 5(산하동 산98-7)	2	
2	초등학교	고현초등학교	북구 화동로 129(송정동 170-3)	1	
3	초등학교	농서초등학교	북구 가재길 57(달천동 1-19)	3	
4	초등학교	농소초등학교	북구 호계로 192(호계동 858-1)	2	
5	초등학교	동대초등학교	북구 신천로 36(신천동 125)	4	
6	초등학교	동천초등학교	북구 고래로 26(천곡동 381-4)	2	
7	초등학교	매곡초등학교	북구 매곡1로 49(매곡동 497)	3	
8	초등학교	매산초등학교	북구 매산로 53(매곡동 334)	3	
9	초등학교	명촌초등학교	북구 명촌10길 11(명촌동 887-1)	3	
10	초등학교	상안초등학교	북구 천곡남로 59(천곡동 434-1)	2	
11	초등학교	송정초등학교	북구 상방로 75(화봉동 427)	1	
12	초등학교	신천초등학교	북구 호계로 349-7(신천동 316-4)	3	
13	초등학교	약수초등학교	북구 약수8길 50(중산동 1006)	3	
14	초등학교	연암초등학교	북구 두부곡4길 35(연암동 354)	3	
15	초등학교	염포초등학교	북구 염포로 667(염포동 179)	3	
16	초등학교	양정초등학교	북구 양정2길 11(양정동 470)	2	
17	초등학교	은월초등학교	북구 당수골23길 7(호계동 1009-1)	3	
18	초등학교	이화초등학교	북구 화정4길 40(중산동 710)	2	
19	초등학교	중산초등학교	북구 신천로 125-28(중산동 156)	2	
20	초등학교	천곡초등학교	북구 천곡길 138(천곡동 560-1)	3	
21	초등학교	호계초등학교	북구 동대13길 20(호계동 266)	3	
22	초등학교	화봉초등학교	북구 화산로 42(화봉동 1339)	2	
23	중학교	강동중학교	북구 산음12길 10(산하동 756)	2	
24	중학교	고현중학교	북구 박상진2로 81(화봉동 1485-1)	1	'20년 신설
25	중학교	농소중학교	북구 호계7길 13(호계동 726)	1	
26	중학교	달천중학교	북구 가재길 51(달천동 11-67)	2	
27	중학교	매곡중학교	북구 매곡1로 59(매곡동 490-1)	2	
28	중학교	상안중학교	북구 양지길 5(상안동 838-1)	2	
29	중학교	연암중학교	북구 사청1길 12(연암동 1128)	2	
30	중학교	울산스포츠과학중학교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 799)	1	
31	중학교	이화중학교	북구 산업로 1631(중산동 803)	2	
32	중학교	진장중학교	북구 진장10길 24(진장동 687-1)	4	
33	중학교	천곡중학교	북구 고래로 38(천곡동 392)	1	
34	중학교	호계중학교	북구 당수골5길 30(매곡동 909)	2	'20년 이설
35	중학교	화봉중학교	북구 통샘1길 2(화봉동 677-1)	2	
36	중학교	효정중학교	북구 염포로 363(양정동 222)	2	

연번	구분	학교명	주소	출입문 개수	비고
37	고등학교	강동고등학교	북구 화암4길 8(산하동 산61-11)	3	'20년 신설
38	고등학교	달천고등학교	북구 가재길 63-23(달천동 1-17)	3	
39	고등학교	동천고등학교	북구 매산로 45(매곡동 336)	3	
40	고등학교	매곡고등학교	북구 사청1길 30(연암동 1153)	2	
41	고등학교	무룡고등학교	북구 고래로 54(천곡동 376-1)	3	
42	고등학교	울산마이스터고등학교	북구 울동6길 7(효문동 34-1)	2	
43	고등학교	울산스포츠과학고등학교	북구 산음3길 16(산하동 799)	1	
44	고등학교	울산에너지고등학교	북구 화동2길 28(화봉동 453)	3	
45	고등학교	울산외국어고등학교	북구 중산동로 32-46(중산동 203-3)	1	
46	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	북구 동대11길 31(호계동 262-4)	2	
47	고등학교	화봉고등학교	북구 화동로 47(화봉동 1441)	3	
48	고등학교	효정고등학교	북구 울동2길 41(효문동 507)	2	
49	특수학교	메아리학교	북구 갯안1길 8(중산동 492-2)	1	
50	특수학교	태연학교	북구 대안4길 60(대안동 156)	1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825호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 [변경]허가 공고**

「소하천정비법」 제10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제12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및 제12조제2항)에 따라 소하천등 정비(소하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시설의 점용·사용)를 허가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시행자 (점용·사용자)	상호 및 명칭	울산광역시**공사		
	대표자 (성 명)	성인*	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로 318
소하천명		제2울동천		
공사 (점용·사용) 개요	위치	양정동 779번지		
	면적	125.30㎡	폐천부지(廢川敷地) 예상 면적	㎡
	기간	착공일로부터 ~ 2020. 10. 30.		
	목적 및 사유	인공구조물 변경 (하천 보강계획 변경)		

열람서류

1. 실시설계도서
2. 위치도(축척 5만분의 1 지형도)

울산광역시 복구 공고 제2020 - 836호

##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7월 16일

### 울산광역시 복구청장

#### 1. 제정이유

울산광역시 복구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를 발전시키고 생활문화를 활성화하며 지역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제정목적, 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지역문화 진흥 사업추진, 위원회의 설치 등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3. 근거법령

- 가. 「지방자치법」 제22조
- 나. 「지역문화진흥법」 제3조, 제4조

#### 4. 제정조례안 : 붙임 참조

#### 5.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8월 5일 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참조: 문화체육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제출처

- 주소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북구청 문화체육과

- 전화번호 : 052-241-7332, 팩스번호: 052-241-7339

## 6. 기타사항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며, 직접 방문하여 열람하실 수도 있습니다.

**[붙임]****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울산광역시 북구의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화”란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행정구역 또는 공통의 역사적·문화적 정체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유산, 문화예술, 생활문화, 문화산업 및 이와 관련된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2. “생활문화”란 지역의 주민이 문화적 욕구 충족을 위하여 자발적이거나, 일상적으로 참여하여 행하는 유형·무형의 문화적 활동을 말한다.
3.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응용미술을 포함한다),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演藝), 국악, 사진, 건축, 어문(語文), 출판 및 만화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지역 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주민의 지역문화 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역문화 진흥 시행계획)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역 문화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고

평가하여야 한다.

1.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기본방향
2. 지역의 문화적 특성 및 실정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정책의 개발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시행계획 추진에 필요한 예산 및 재원에 관한 사항
4. 문화환경 취약대상 지원 등 문화격차 해소에 필요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양성 및 지원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장은 시행계획의 효과적인 수립·시행을 위하여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지역문화에 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지역문화 진흥 사업추진)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의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지역 문화예술 및 지역 전통문화 관련 활동사업
  2. 지역 문화예술 행사와 관련된 사업
  3. 지역 문화예술의 국내·국외 교류 사업
  4. 지역문화 축제와 관련된 사업
  5. 지역 전통문화의 전승 및 보존사업
  6.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 및 전통문화 보존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단체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방법 및 절차 등은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7조(생활문화 지원) ① 구청장은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문화예술단체 또는 동호회의 생활문화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제공

- 2. 생활문화 역량을 높이기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3. 생활문화 관련 단체 및 동호회 상호간의 연계활동 촉진사업
- 4. 생활문화 활동의 우수사례 발굴 및 확산을 위한 사업
- 5. 그 밖에 구청장이 생활문화 활성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사무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 진흥을 위해 제6조, 제7조에 따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려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사무의 위탁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제9조(지역문화 진흥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지역문화 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1. 지역문화 진흥에 관한 기본시책과 계획에 관한 사항
- 2. 지역문화 진흥을 위한 문화정책 연구 및 개발에 관한 사항
- 3. 지역문화 발전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지역문화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성별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지역문화업무 담당국장
-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 3. 지역문화에 관하여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지역문화 관련 단체·기관의 대표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으로 그 밖에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3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간사) 위원회에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지역문화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울산광역시 북구 문화정책위원회 조례」는 폐지한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의 건 제 출 서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명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전화번호	
	주 소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그 이유 등을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